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4. 12. 19.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4년 11월 13일

나.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4년 11월 19일 회부

라. 상정일자 : 제185회 영등포구의회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위원회
(2014. 12. 11)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정국장 이철호)

가.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개정 및 안전행정부의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표준 준칙안」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교부신청·교부결정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보조대상 사업을 정함(안 제4조)
-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함 (안 제5조)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정함 (안 제6조 ~ 제14조)
- 지방보조금 지원 계획의 수립, 교부조건, 교부결정통지, 교부방법, 성과평가 및 교부결정 취소 등을 정함 (안 제15조 ~ 제2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기영)

-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2014. 5. 28. 공포, 2014. 11. 29. 시행)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성과 평가 등의 기준이 법제화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부합한 조례를 개정하여 영등포구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보조사업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에 영등포구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및 방법, 보조사업의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에 보조대상 사업은 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규정하였고,
- 안 제5조에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에 관한 사항 및 예산 편성 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 안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16조에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지원규모·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공고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18조에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안 제27조에 즉시비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였고,
- 안 제30조에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에 대하여 주민에게 공시하도록 하였으며,

- 안 제31조에 구청장은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게는 5년의 범위 내에서 교부를 제한하도록 하였으며,
 - 안 제32조에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에 관한 구청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음.
- 이 전부개정 조례안은 그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지방보조금 제도의 통일성을 도모하고, 지방보조금을 투명하고 계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법률로써 규정한 지방보조금 운영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고, 안전행정 부로부터 시달된 표준조례안을 준용하여 작성한 것으로 법체제나 자구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짐.
 - 다만, 제4조(보조사업 대상)제4호1) 조문 중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는 개정된 「지방재정법」 부칙 제5조(기부·보조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에 따라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반영한 부칙 조문의 신설이 요구되며,

1) 제4조(보조사업 대상)

4. 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방재정법 제17조 신·구 조문 대비표 】

현행	개정안
<p>제17조(기부·보조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보조·출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2·3·4. (생략)</p>	<p>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u>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u></p> <p>1·2·3·4. (현행과 같음)</p> <p>부칙</p> <p>제5조(기부·보조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 정부조직법 개정(2014.11.19 시행)으로 안전행정부가 행정자치부로 기관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제5조제3항의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는 조문 수정이 요구됨.

○ 제6조에 따라 설치되는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임기,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당연직 위원의 직명 표기 여부, 위촉직 위원에 구의원 포함 여부, 위원의 임기 규정 등에 대한 위원회 차원의 검토 및 논의가 요구되며, 집행부에서는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2018년 1월 1일 부터는 위원회 구성시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사전에 이를 감안한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4. 수정안 요지

가. 수정이유

- 본 조례안의 내용 중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기관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시행에 따른 부칙 조문을 신설 및 조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함.

나. 주요골자

- 안 제5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하며,
- 안 제30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 안 제30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고
- 안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에 지출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안 부칙 제2조를 제3조로 하고
- 안 부칙 제3조를 제4조로 신설하는 것으로 한다.

5.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8
----------	----------

제안년월일 : 2014. 12.

제출자 : 허홍석 위원외 1인

1. 수정이유

- 본 조례안의 내용 중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기관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시행에 따른 부칙 조문을 신설 및 조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함.

2. 주요골자

- 안 제5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하며,
- 안 제30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 안 제30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고
- 안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에 지출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안 부칙 제2조를 제3조로 하고
- 안 부칙 제3조를 제4조로 신설하는 것으로 한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5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하며,

○ 안 제30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 안 제30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고

○ 안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에 지출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안 부칙 제2조를 제3조로 하고

○ 안 부칙 제3조를 제4조로 신설하는 것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에 지출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

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어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상(具常)시인 기념사업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제6항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⑪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

리 조례」”로 한다.

⑫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⑮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⑯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수 정 안 대 비 표

개 정 안	수 정 안
<p>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구 청장은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절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p> <p>② 지방보조금은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p> <p>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u>안전행정부</u>가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p> <p>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개정안과 같음)</p> <p>② (개정안과 같음)</p> <p>③ ----- ----- ----- <u>행정자치부</u>----- -----.</p> <p>④ (개정안과 같음)</p>
<p>제30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구청장은 법 제60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교부 현황, 성과 평가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 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u>안전행정부장관</u>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u>안전행정부장관</u>이 통보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p>	<p>제30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 ----- ----- ----- ----- <u>행정자치부장관</u>----- -----.</p> <p>② ----- <u>행정자치부장관</u>----- -----.</p>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안전 지원에

부칙

제1조(시행일) (개정안과 같음)

제2조(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4조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에 지출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극어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상(具常)시인 기념사업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共有) 축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제6항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

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⑪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⑫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호행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⑮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⑯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

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신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어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상(具常)시인 기념사업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제6항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⑪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⑫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⑮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⑪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28 호
----------	--------

제출연월일 : 2014. 11.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개정 및 안전행정부의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표준 준칙안」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교부신청·교부결정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보조대상 사업을 정함(안 제4조)
- 나.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함 (안 제5조)
- 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정함 (안 제6조 ~ 제14조)
- 라. 지방보조금 지원 계획의 수립, 교부조건, 교부결정통지, 교부방법, 성과평가 및 교부결정 취소 등을 정함 (안 제15조 ~ 제28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지방재정법」
- 나. 예산조치 : 필요없음
- 다. 협의사항
 - (1) 규제심사 : 해당없음
 - (2) 부패영향평가 : 평가실시(의견없음)
 -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실시(의견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4.10.16~11.5, 20일간) : 의견없음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조금관리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구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대상 사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서울특별시 보조재원에 따른 것으로서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경우
4. 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절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안전행정부가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장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제6조(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의3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보조금 관련 소관 국장·소장 중 2명 이상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제7조(위원회 기능) ①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2. 지방보조금 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조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대한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5. 수년간 지속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업무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부서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지방보조금의 교부 등

제1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의2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연도마다 해당연도의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구보나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6조(보조신청)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5. 보조사업 기간
6.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를 영위하는 주 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사용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17조(교부결정) 구청장은 제16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제18조(교부조건) ①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9조(교부결정 통지) ①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18조에 따른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조건서를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부한다.

② 제1항의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0조(교부방법) 지방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그 밖의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게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21조(용도의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구청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구청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지방보조사업 추진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추진 상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추진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23조(실적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제24조(정산검사) ①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하였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제23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

제25조(감독 등)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6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27조(성과평가)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의7에 따라 국시비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대상·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28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5.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구청장이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24조에 따라 확정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⑥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같은 종류의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할 수 있다.

⑦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32조의9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 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두어 구청장이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승인없이 지방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 제32조의9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그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항상 공시하여야 한다.

제30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구청장은 법 제60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교부 현황, 성과 평가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 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통보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제31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제28조제2항제1호 부터 제4호에 해당되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

보조금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제32조(이의신청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구청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어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상(具常)시인 기념사업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⑪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⑫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호행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⑮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⑯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